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b>1. 도입</b></p> <p>제공 서비스</p> <p>1.5 정의</p> <p>본 기본계약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하기 명시된 의미로 정의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 교신 (Communication)은 지시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li> <li>•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은 관련 국가에 대해 본 기본계약서와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와 해당 개별부속약정 또는 해당 개별추가문서를 보완 또는 개정하는 국가별 조건을 의미합니다.</li> <li>•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은 모든 관련 국가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을 의미합니다.</li> <li>•</li> </ul>	<p><b>1. 도입</b></p> <p>제공 서비스</p> <p>1.5 정의</p> <p>본 기본계약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하기 명시된 의미로 정의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 교신 (Communication)은 지시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의미합니다.</li> <li>• 국가별 부속계약 (Country Conditions)은 관련 국가에 대해 본 기본계약서와 해당 서비스 부속계약서와 해당 개별부속약정 또는 해당 개별추가문서를 보완 또는 개정하는 국가별 조건을 의미합니다.</li> <li>• 고객 당사자(Customer Party)는 거래신청서나 서비스변경신청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지정된 기관을 의미합니다.</li> <li>•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Legislation)은 모든 관련 국가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법을 의미합니다.</li> <li>•</li> </ul>	<p><b>서비스 기본 계약서</b></p> <p>Customer Party 정의를 추가</p>
<p><b>2 책임</b></p> <p><b>2.1 연대 책임</b></p> <p>2.1.1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p>	<p><b>2 책임</b></p> <p><b>2.1 연대 책임</b></p> <p>2.1.1 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보장합니다.</p>	<p><b>서비스 기본 계약서</b></p> <p>법인인 아닌 형태의 고객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추가</p>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b>변경 전</b></p> <p>(a) 각 당사자는 법인설립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존속합니다.</p> <p>(b) 각 당사자는 거래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인의 권한 혹은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c) 거래 문서의 조건은 각 당사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며 이행가능합니다.</p> <p><b>2.2 은행의 책임</b></p> <p>2.2.1 은행은 합리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주의를 다하여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p> <p>2.2.2 은행 및 그룹의 계열사는 서비스 이행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규정 위반이 초래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p> <p><b>2.3 귀하의 책임</b></p> <p>2.3.1 귀하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즉시 은행에 제공하고, 귀하의 담당 연락처를 포함한 귀하에 대한 정보의 변경 시에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기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귀하가 이전에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의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p> <p>2.3.2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절도, 사기, 불법 활동, 손실, 피해 및 기타 오용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변경 후</b></p> <p>(a) 각 당사자는 법인설립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으로 설립되어 존속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유효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존속합니다.</p> <p>(b) 각 당사자는 거래 문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인의 권한 혹은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p> <p>(c) 각 당사자의 거래 문서의 체결과 이행은 각 당사자의 설립관련 문서, 조직관련 문서, 정관, 각 당사자가 이행 당사자이거나 각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대한 계약 및 증서 (신탁 증서 등을 포함)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각 당사자에 부과된 의무, 제한 및 금지사항의 위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p> <p>(d) 거래 문서의 조건은 각 당사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며 이행가능합니다.</p> <p>2.1.2 또한 각 당사자는 2.1.1 조항의 진술과 보장이 모든 거래 문서의 종료 또는 만기일자까지 모든 면에서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보장합니다.</p> <p>2.1.3 2.1.1 또는 2.1.2 조항 위반은 거래 문서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합니다. 만일 어떤 당사자가 2.1.1 또는 2.1.2 조항 위반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p> <p><b>2.2 은행의 책임</b></p> <p>2.2.1 은행은 합리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주의를 다하여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p> <p>2.2.2 은행 및 그룹의 계열사는 서비스 이행으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거나 정부 또는 기타 당국의 규정 위반이 초래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p> <p><b>2.3 귀하의 책임</b></p>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2.3.1 귀하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문서와 정보를 즉시 은행에 제공하고, 귀하의 담당 연락처를 포함한 귀하에 대한 정보의 변경 시에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상기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귀하가 이전에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의 모든 합리적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p> <p>2.3.2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절도, 사기, 불법 활동, 손실, 피해 및 기타 오용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p> <p>2.3.3 고객 당사자들(Customer Parties)이 거래신청서 또는 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별도의 법적 자격 (비법인 합작투자회사 또는 신탁 등)없이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 고객 (each customer)은 다음을 약속합니다.</p> <p>2.3.3.1 거래 문서에 따른 고객의 당행 또는 그룹에 대한 모든 의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p> <p>2.3.3.2 고객이 하나 이상의 고객 당사자에 송부하거나 또는 당행이 하나 이상의 고객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요청, 통지, 합의, 지시 또는 교신은 모든 고객 당사자에 송부 또는 이들로부터 수령한 요청, 통지, 합의, 지시 또는 교신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p> <p>2.3.3.3 어떤 사유로 어느 한 고객 당사자 (Customer Party)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고객 당사자들(Customer Parties)에 대한 거래 문서의 효력은 지속됩니다.</p>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b>7 수수료</b></p> <p>7.1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은 은행의 표준 수수료 및 이자지급 체계에 따릅니다. 은행은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즉시 수수료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p> <p>7.2 은행은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지급을 위해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거래 문서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가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또는 귀하의 지시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귀하가 은행 또는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보유한 다른 계좌에서도 해당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래 문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연체 금액에 대하여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합리적이며 선의로 은행이 정한 이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및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p>	<p><b>7 수수료</b></p> <p>7.1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은 은행의 표준 수수료 및 이자지급 체계에 따릅니다. 은행은 귀하에게 합리적으로 통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즉시 수수료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p> <p>7.2 은행은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지급을 위해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서 해당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거래 문서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가 지급불능 상태(귀하가 수탁자인 경우 해당 신탁의 지급불능 상태를 포함) 경우, 또는 귀하의 지시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귀하가 은행 또는 그룹의 기타 계열사에 보유한 다른 계좌에서도 해당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거래 문서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귀하는 해당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해당 연체 금액에 대하여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합리적이며 선의로 은행이 정한 이율에 따라 산출된 이자 및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p>	<b>서비스 기본 계약서</b>  지급불능 상태에 대한 설명 추가
<p><b>1 적용 및 정의</b></p> <p>1.1 적용</p> <p>본 계좌개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 부속계약서는 귀하와 은행 간에 개설되는 모든 계좌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서비스부속계약서는 서비스기본계약서에 추가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가별 부속계약서와 달리 정해진 사항은 국가별 부속계약서를 따릅니다.</p>	<p><b>1 적용 및 정의</b></p> <p>1.1 적용</p> <p>본 계좌개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칭함) 부속계약서는 귀하와 은행 간에 개설되는 모든 계좌에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서비스부속계약서는 서비스기본계약서에 추가되는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가별 부속계약서와 달리 정해진 사항은 국가별 부속계약서를 따릅니다.</p>	<b>계좌개설서비스부속계약서</b>  계좌 약관에 대한 정의 중 '추가 문서' 추가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b>1.2 정의</b></p> <p>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기본계약서에서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Account) - 계좌 약관에 따라 은행에 개설할 예정이거나 이미 개설된 모든 개별 계좌를 의미합니다.</li> <li>• 계좌개설신청서(Account Opening Form)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신청 양식을 의미합니다.</li> <li>• 계좌 약관(Account Terms) - 다음 모두를 의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본 서비스 부속 계약서</li> <li>(b) 모든 관련 부속약정</li> <li>(c)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li> <li>(d) 해당 서비스별 보조약정</li> </ul> </li> <li>• 이용자 계열회사 부속 약정 (Customer Associate Annex) - 귀하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공될 제3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속 약정을 의미합니다.</li> </ul>	<p><b>1.2 정의</b></p> <p>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본 서비스부속계약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기본계약서에서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Account) - 계좌 약관에 따라 은행에 개설할 예정이거나 이미 개설된 모든 개별 계좌를 의미합니다.</li> <li>• 계좌개설신청서(Account Opening Form) -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신청 양식을 의미합니다.</li> <li>• 계좌 약관(Account Terms) - 다음 모두를 의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본 서비스 부속 계약서</li> <li>(b) 모든 관련 부속약정</li> <li>(c) <b>모든 관련 추가문서</b></li> <li>(d)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li> <li>(e) 해당 서비스별 보조약정</li> </ul> </li> <li>• 이용자 계열회사 부속 약정 (Customer Associate Annex) - 귀하의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제공될 제3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부속 약정을 의미합니다.</li> </ul>	
<p><b>4 해지</b></p> <p>4.1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상황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계좌약관에 따라 귀하와 은행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귀하의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해지가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은 통지 없이 귀하의 계좌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4.2 귀하는 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지 요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p>	<p><b>4 해지</b></p> <p>4.1 은행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예외상황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계좌약관에 따라 귀하와 은행이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귀하의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해지가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은 통지 없이 귀하의 계좌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4.2 귀하는 은행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대한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지 요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p>	<p><b>계좌개설서비스부속계약서</b></p> <p>'추가문서'라는 용어 추가</p>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있습니다. 계좌약관은 은행에 대한 채무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p> <p>4.3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 중 일부라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부속 약정과 해당 국가별 부속계약도 즉시 종료됩니다.</p> <p>4.4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제7조는 계좌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p>	<p>있습니다. 계좌약관은 은행에 대한 채무가 모두 상환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p> <p>4.3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 중 일부라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부속 약정과 <b>추가문서</b>, <b>당 국가별 부속계약</b>도 즉시 종료됩니다.</p> <p>4.4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의 제7조는 계좌약관의 전체 또는 일부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p>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1.2 정의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사용되었으나 아래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정의된 바를 따릅니다.</p> <p>이용자 계열회사 (Customer Associate) - 전자금융 이용 및 신청을 위해 귀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p>	<p>1.2 정의 본 서비스 부속계약서에 사용되었으나 아래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 기본계약서에서 정의된 바를 따릅니다.</p> <p>이용자 계열회사 (Customer Associate) - 전자금융 이용 및 신청을 위해 귀하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계좌소유주를 의 미합니다.</p>	<b>E-채널 서비스 부속계약서</b> '개인이나 법인'을 계좌 소유주 용어로 대체.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b>3 책임과 면책</b></p> <p>서비스기본계약서 제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제 6.2조에서 6.7조를 제외하고 은행 또는 그룹의 계열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부터 직접 발생되거나 예측 가능한 것 ("청구가능한 손실 (Actionable Loss)")이외의 다른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p>	<p><b>3 책임과 면책</b></p> <p>3.1 서비스기본계약서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제6.2 조부터 제6.7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과 그룹의 계열사는 고의 또는 <b>과실에 의해</b> 직접적으로 발생되거나 예측가능한 손실 ("청구가능한 손실 (Actionable Loss)")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b>예측가능한 손실은 간접손실을 포함합니다.</b></p> <p>3.2 서비스기본계약서 제6.7조는 전체가 삭제됩니다.</p> <p><b>4 수수료</b></p> <p>서비스기본계약서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7.1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을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수수료, 비용, 요금, 이자, 경비 등은 은행의 표준 수수료 및 이자지급 체계에 따릅니다. 은행은 귀하에게 <b>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b> 또는 귀하와의 합의를 통해 수수료와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어떠한 공제, 원천징수 또는 기타 비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은행이 동 수수료의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p>	<p><b>국가별 부속 계약 (대한민국)</b></p> <p>은행의 책임범위를 중과실에서 과실로 확대</p> <p>은행의 책임범위를 예측 가능한 간접손실로 확대</p> <p>은행의 손해배상 책임한도 조항 삭제</p> <p>수수료에 대한 대고객 안내방법 구체화</p>
<p><b>계좌 개설 국가별 부속계약</b></p> <p>&lt;신설&gt;</p>	<p><b>계좌 개설 국가별 부속계약</b></p> <p><b>3 이자</b></p> <p>계좌개설서비스 부속계약서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귀하의 계좌에 대해 발생하는 예금이자는 <b>홈페이지 등에</b> 관련 공시 또는 귀하와 은행 간 합의된 바에 따라 해당 기간과 이를 적용하여 산출되며, 동 이자금액은 해당 예금 잔액에 대해 해당 이자지급일자에 부리됩니다. 이자율은 은행이 귀하에 <b>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으로</b> 통지하거나 또는 귀하와의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은행이 예금이자를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후 지급함에 동의합니다.</p>	적용 이자 공시방법 구체화

##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b>예금계좌 국가별 부속계약</b></p> <p>3 예금계좌 개별 부속약정 제3조의 마지막 문장이 삭제되고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p> <p>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p> <p>(a) 귀하가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각 예금은 해당 예금의 만기일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p> <p>(b) 은행은 각 정기예금계좌의 만기일에 예금 원금총액과 입금일부터 부리된 예금 이자의 총액에 수수료 또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p> <p>(c) 은행은 귀하의 지시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p>	<p><b>예금계좌 국가별 부속계약</b></p> <p>3 예금계좌 개별 부속약정 제3조(c)의 마지막 문장이 삭제되고 (d)가 추가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p> <p>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p> <p>(a) 귀하가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각 예금은 해당 예금의 만기일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p> <p>(b) 은행은 각 정기예금계좌의 만기일에 예금 원금총액과 입금일부터 부리된 예금 이자의 총액을 지급합니다(수수료 또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후 지급).</p> <p>(c) 은행은 귀하의 지시서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p> <p>(d)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p>	정기예금의 추가 중도해지 가능조항
<p><b>E-채널 국가별 부속계약</b></p> <p>&lt;신설&gt;</p>	<p><b>E-채널 국가별 부속계약</b></p> <p>3. E-채널 서비스 부속계약서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p> <p>은행은 유지 보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E-채널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귀하에게 일시 중단에 대하여 서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고시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통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p>	서비스 구체화 일시중단 시 공시방법